

e-안심팩토링대출용 통합약정서 개정대비표

1. 주요 개정 내용

현 행	개 정	비고
<p>e-안심팩토링대출용 통합약정서(판매기업용)</p> <p>매출채권(팩토링)거래약정서(e-안심팩토링대출용) (기재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추 가 약 정 서 [e-안심팩토링대출용]</p> <p>제 1 조 (서류의 제출) ~ 제 2 조 (입금계좌) (기재생략)</p> <p>제 3 조 (개별대출의 실행) ①~③ (기재생략)</p> <p>④ 본인에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담보매출채권은 그 만기일이 발행일(통보일)로부터 180 일 이내인 채권에 대하여만 대출을 신청하기로 합니다.</p> <p>⑤ 대출가능기간은 외상매출채권별로 은행과 구매기업이 약정한 협력기업의 대출취급가능일부터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 전 은행영업일까지로 합니다.</p> <p>⑥ (기재생략)</p> <p>제4조 (개별대출의 상환기일 및 상환방법) ~ 제11조 (본 추가약정의 효력) (기재생략)</p>	<p>e-안심팩토링대출용 통합약정서(판매기업용)</p> <p>매출채권(팩토링)거래약정서(e-안심팩토링대출용)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추 가 약 정 서 [e-안심팩토링대출용]</p> <p>제 1 조 (서류의 제출) ~ 제 2 조 (입금계좌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3 조 (개별대출의 실행) ①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제></p> <p>④ 대출가능기간은 외상매출채권별로 은행과 구매기업이 약정한 협력기업의 대출취급가능일부터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 직전 은행영업일까지로 합니다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 (개별대출의 상환기일 및 상환방법) ~ 제11조 (본 추가약정의 효력) (현행과 같음)</p>	<p>외상매출채권 만기일 단축에 따른 삭제</p> <p>체상 및 용어 수정</p> <p>체상</p>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(포괄계약) (e-안심팩토링대출용)</p> <p>(기재생략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(포괄계약) (e-안심팩토링대출용)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	
---	---	--

2. 개정 시행일: 2019년 7월 4일

3. 기 거래 고객에 대한 적용: 적용